

# 인지세 납부 안내문

## ■ 인지세 안내

부동산 분양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공급계약체결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 
이점 참고하시어 공급계약체결일 전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지참하시기 바라며,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■ 인지세 과세대상 및 구입처

구분	내용	
과세대상	분양계약서(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)	
발급처	방문 발급	우체국·은행 방문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고 계약서에 첨부(사본)
	온라인 발급	전자수입인지사이트( <a href="http://www.e-revenuestamp.or.kr">www.e-revenuestamp.or.kr</a> )

## ■ 과세문서 및 세액 [인지세법 제3조 제1항]

과세문서 종류	기재금액	인지세액
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	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5만원

※ 상기 과세문서 종류와 금액에 맞는 인지세액 납부 후 전자수입인지 사본을 첨부하여야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
## ■ 인지세 연대납부에 따른 환급안내

- 인지세법 및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개정에 따라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수분양자께서는 공급계약 체결 시 전자수입인지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인지세액의 50%는 향후 개별로 환급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인지세액 환급 시 필요서류 :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, 계약자 신분증 사본, 전자수입인지 사본

※ 공급계약 체결 시 전자수입인지 사본,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.

주택형	인지세액	환급예정액
84㎡A·B	15만원	7만 5천원

## ■ 인지세 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

### [온라인 이용방법]



### [오프라인 이용방법]



※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하여야 하며,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의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.  
※ 계약체결 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등기 시에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